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충청남도의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된 사항
2. 충청남도의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실무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2. 충청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행정과장
2.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산보육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철도항공과장
3. 충청남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교통과장

4. 충청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된 유관 기관 소속 과장

제4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며,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3조제2항제1호의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검토·확인한 후 서면으로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장으로 한다.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실무협의회 위원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실무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협의사항의 이행)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과 보관) ① 실무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회의진행상황
4. 협의사항
5. 협의결과
6. 위원 발언요지
7. 그 밖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